제96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재처분 기준(신설)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,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을 세부 규정 ▶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.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재처분 기준(신설) ㅇ 항만기술산업 육성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,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 기간 및 횟수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한 기관이 해당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업무를 추진하도록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▶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	
2	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산림청)	1.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(강화) o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정비 –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생육환경, 경관영향, 재해예방 분야에 대한 현행 규정의 구체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함 ▶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	1.비중요
3	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부동산투자회사의 대출 관련 준수사항(신설) o 리츠가 대출 투자 시 대출 방법 절차 준수사항 마련 ① (정관 기재) 대출 투자의 비중 한도와 대출의 대상을 정관에 기재(안 제8조의3 제1항 제1호) ② (내부통제기준 마련) 합리적인 대출 투자가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투자 판단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 마련(안 동조 동항 제2호) ③ (연계거래 금지) 리츠의 대출투자 대상*이 아닌 자에 대한 연계거래를 이용한 대출 금지(안 동조 동항 제3호)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* 부동산개발사업 법인, 사회기반시설(SOC) 민간투자사업자, 민자도로 사업자, 프로젝트금융투자회자(PFV) 등 4곳만 가능(부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) ④ (공시) 리츠의 주주가 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 부과(안 동조 동항 제4호) ▶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▶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의2▶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의3	
4	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직원의 배치기준(강화) ㅇ '25년 1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 2.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,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'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설정 ▶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	1.비중요
5	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마약,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지정(신설) ㅇ (마약)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'부토니타젠'을 마약으로 지정 ㅇ (향정)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한 '브로마졸람'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'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'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(원료물질) 유엔에서 원료물질(마약류 전구체)로 추가 등재한 '4-피페리돈' 등 18개 물질 원료물질 1군으로 지정 ▶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	
6	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(교육부)	1.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 제한 절차 등(신설) ㅇ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직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유족에게 더 보상하고,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양육책임 불이행의 기간·정도 등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급여 감액 ▶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조의2	1.비중요
7	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자금의 차입한도 초과 차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 신설(신설) ㅇ 예금인출 등 긴급·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차입당시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금고 총자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되, 초과 차입 한도에 따른 승인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함 -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이내인 경우 : 신용공제대표이사 승인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: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▶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7조	